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382 |
|----------|------|

2013년 7월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류경기 행정국장)

가. 제안 이유

- 1)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3.5.16일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 2)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월 중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개설·운영할 계획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라고 판단되는 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설립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 설립시기 : 2013년 9월
- 장 소 : (구)질병관리본부 8동 4층
- 설립규모 : 전용면적 544.86㎡(165평), 전체면적 838㎡(254평)
- 공간내용 : 교육장, 회의실, 단체보육실, 자료 및 정보검색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
- 주요사무 : 시민사회단체 활동 및 공간 지원, 공익활동가 교육·상담,
정보 및 자료 지원, 시민사회단체간,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기타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업무 등

2)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위탁방법 :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 위탁 주요사무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민간위탁 필요성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함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기본원칙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침해할 소지가 큼.
- 또한, 시민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판단되는 바,
- 단기적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 민간위탁방식이므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고, 역량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2013년 예산 기반영).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가칭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행정과-27492, 2012.11.7)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서울 NPO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개괄적 검토

- 본 동의안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시행(2013.5.16)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NPO지원센터(이하 'NPO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는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육성과 네트워크구축, 활동공간 제공, 교육 및 연구, 사업지원 등의 중심체로서 NPO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

| 설립개요 | | | |
|-----------|-------------------------------------|--|-------------------------|
| ① 명칭 | 「서울 NPO지원센터」 | | |
| ② 설립시기 | 2013년 9월 | | |
| ③ 장소 | (구)질병관리본부 8동 4층 | | |
| ④ 설립규모 | 전용면적 544.86㎡(165평), 전체면적 838㎡(254평) | | |
| ⑤ 공간구성(안) | | | |
| 구분 | 사무·상담 공간 99㎡(30평) | 대어 공간 297㎡(90평) | 자료실 및 기타공간 149㎡(45평) |
| 시설 내역 | ·사무공간 66㎡(20평) ·상담실 33㎡(10평) | ·교육장 116㎡(35평) ·회의실(2실) 116㎡(35평) ·풀뿌리보육실 65㎡(20평) | ·자료실 및 정보검색센터 149㎡(45평) |

- NPO지원센터 운영방식은 관주도의 직영방식보다 중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를 통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NPO지원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인 바, 이에 따라 NPO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참고로 NPO지원센터와 유사(類似)한 센터조직을 설립한 부산, 광주, 대구, 충북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모두 민간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참고자료-① 참조).

나. 민간 위탁 운영 방안

-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계획이며, 집행부는 2013년 7월경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 위탁 운영 방안 | |
|----------|--|
| ① 위탁범위 | : 센터의 사업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 ② 위탁기간 | : 2013. 9. 1 ~ 2016. 8.31(3년) |
| ③ 위탁비용 | : 2,428,700천원/3년(1,000,000천원/1년) ※ 2013년 4개월 소요예산(428,700천원) |
| - 산출기준 | |
| ○ 인건비 | : 83,400천원(4개월) ⇒ 연간 250,200천원 - 4개월 × 7 × 2,979천원(4대보험 등 제보험 및 각종 수당 포함) |
| ○ 운영비 | : 37,400천원(4개월) ⇒ 연간 112,200천원 |
| ○ 사업비 | : 307,900천원(4개월) ⇒ 연간 637,600천원 |
| ④ 선정방식 | : 공개경쟁 |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안)

| 구 분 | 선정인원 | 후보인원 | |
|----------|------|------|--|
| 시민사회 전문가 | 3명 | 6명 | ·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3명 · 기부 및 자원봉사 분야 전문가 3명 ·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가 3명 |
| 시 의 회 | 1명 | 3명 | · 시의회 의원 3명 |
| 법 조 계 | 1명 | 3명 | · 법률전문가 3명 |
| 학 계 | 1명 | 3명 | · NGO분야 전공교수 3명 |
| 공 무 원 | 1명 | 1명 | · 행정과장(당연직) |
| 계 | 7명 | 13명 | |

다. 민간 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

- NPO지원센터의 채택가능한 운영방식은 관(官)주도 방식, 관(官)과 민간 공조방식, (순수)민간주도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방식은 관(官)과 민간 공조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방식을 통해 집행부가 일정부분 주도하지만 민간전문가가 직접 시민사회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가 재정적 지원을 맡고, NPO들이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NPO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방식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탄력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집행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 현실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와의 소위 ‘갑을 관계’로 인한 자율성 침해 우려와 함께, 수탁기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집행부와의 마찰·갈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음.
- 한편, 본 동의안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민간이 운영할 경우 활성화될 수 있거나,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여짐.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382 |
|----------|------|

제출년월일 : 2013년 6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3.5.16일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 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월 중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개설·운영할 계획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라고 판단되는 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설립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 설립시기 : 2013년 9월
 - 장 소 : (구)질병관리본부 8동 4층
 - 설립규모 : 전용면적 544.86㎡(165평), 전체면적 838㎡(254평)
 - 공간내용 : 교육장, 회의실, 단체보육실, 자료 및 정보검색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
 - 주요사무 : 시민사회단체 활동 및 공간 지원, 공익활동가 교육·상담, 정보 및 자료 지원, 시민사회단체간,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기타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업무 등

나.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위탁방법 :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 위탁 주요사무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함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기본원칙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NPO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침해할 소지가 큼
- 또한, 시민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판단되는 바,
- 단기적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 민간위탁방식이므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고, 역량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2013년 예산 기반영)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가칭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행정과-27492, 2012.11.7)